1953. 11. 3.
제3종우편물인가

관보

편집 및 발행 총 무 처
전 화 70—4331
인 쇄 대한공론사
대 표 전 화 75—6161
관보부직통 75—6315

제7457호

1.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관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3. 비치용 관보는 5년이상 보관한다.

1976 9. 24. (금)

BA0 193413

차 례

법 령

대통령령

○대통령령 제8,252호(향토예비군대원복제중개정령) ····· 3

관 련

고 시

○법무부고시 제475호~제482호(국적상실) ····· 4
○건설부고시 제149호(도로구역변경) ····· 5
○문화공보부고시 제348호(천연기념물지정) ····· 6
○항만청고시 제32호(공유수면점용및공작물설치허가) ····· 6
○목포지방항만관리청고시 제68호(공유수면점용및공작물설치기간연장허가) ····· 6
○전파관리국고시 제663호~제665호(무선국허가) ····· 7
○전파관리국고시 제666호(무선국중개정) ····· 7
○전파관리국고시 제667호(무선국허가) ····· 8
○전파관리국고시 제668호(면허부여) ····· 8

공 고

○상공부공고 제76-108호(새마을공장지정및취소) ····· 8
○건설부공고 제132호(도로사용폐지및사용개시) ····· 10
○보건사회부공고 제53호(약사행정처분사항) ····· 11

지방행정

○부산시고시 제1,393호(도시계획사업〈경동공업전문학교부지조성〉) ····· 11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공고 제45호(직원등록) ····· 11

(이면 계속)

결 람

2503 A—1—4
1969. 1. 31승인

190×268 신문용지 50g/m²

대한민국정부

831

○압수물환부공고(춘천지방검찰청) 12
○공시최고 16
○심 판 22
○결 정 23

대통령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향토예비군대원복재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정 희 ㊞

1976년 9월24일

국무총리 최 규 하

국무위원 국방부장관 서 종 철

◉대통령령제8,252호

향토예비군대원복제중개정령

향토예비군대원복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 중 "특수모(방한모)"를 "방한모"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작업복 및 특수복(방한복)으로"를 "작업복·방한복 및 잠바로"로 한다.

제4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잠바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4월말일까지 착용한다.

제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과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예비군재복을 착용할 때에는 예비군모 및 예비군화를 착용하고 예비군표지장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잠바는 회망자에 한하여 착용하되, 동원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뒤집어 착용할 수 있다.

〔별표 1〕 중 "나. 특수모(방한모)"를 "나. 방한모"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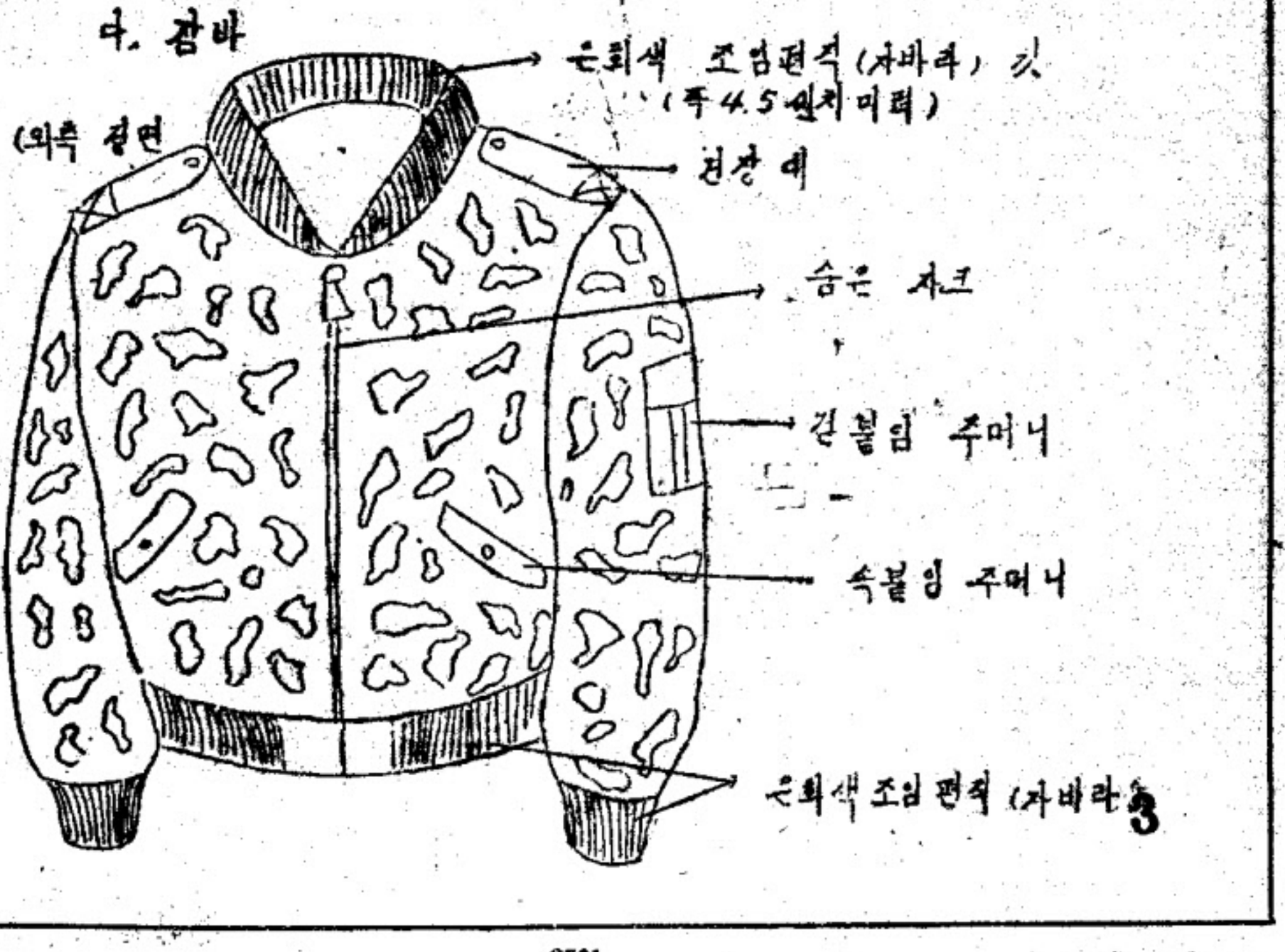
〔별표 2〕 중 "나. 특수복"을 "나. 방한복"으로 하고, 동표의 다. 목을 라. 목으로 하며, 동표에 다. 목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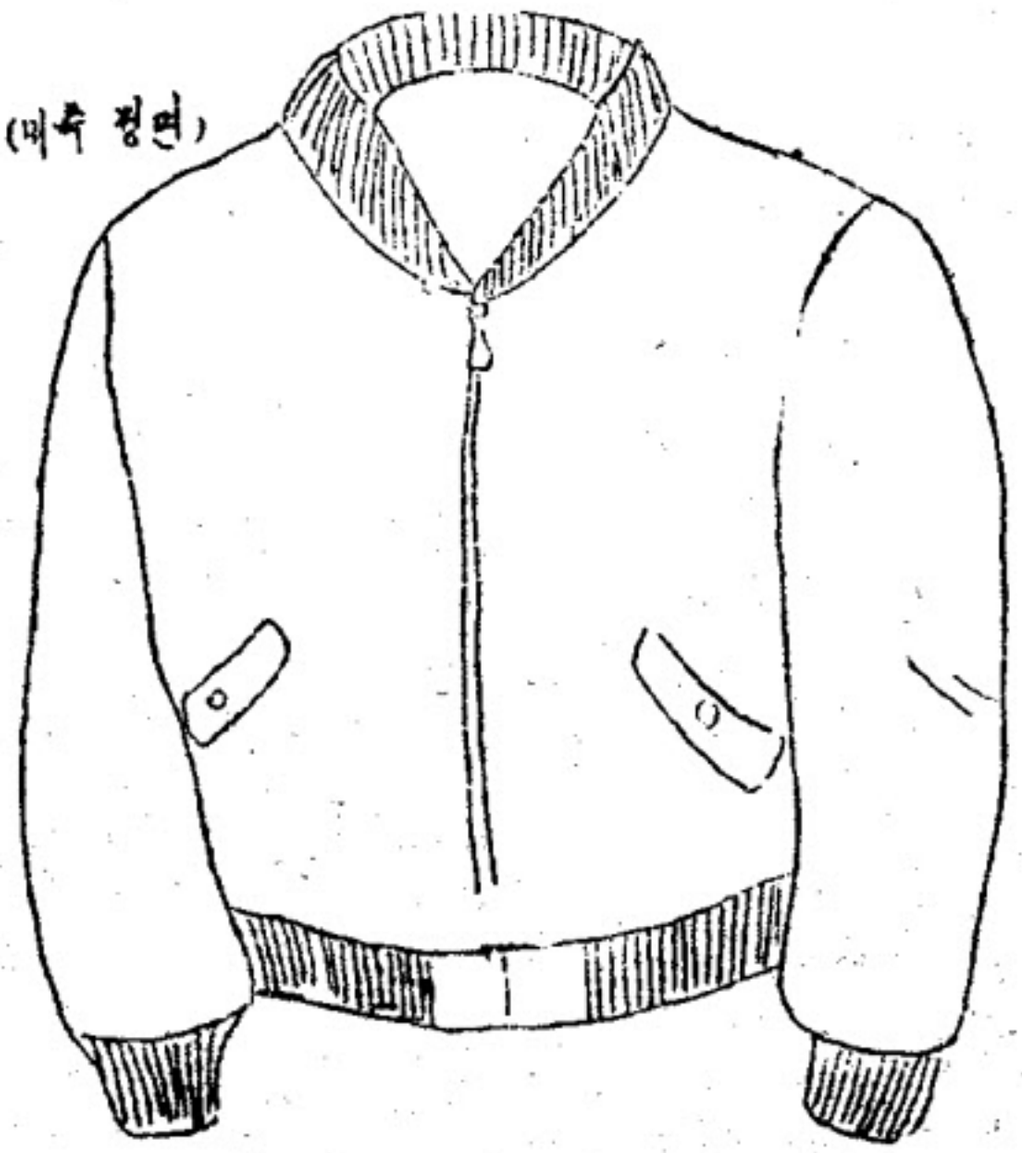
부 칙

이 영은 1976년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예 비 군 제 복





지 질 : 면직 혼방 또는 화섬
색 상 : 국방색 5도색 일록무늬
착 용 : 동원 또는 훈련시

지 질 : 면직 혼방 또는 화섬
색 상 : 자주색
(현역군용 색상은 제외함)
착 용 : 평상시

고 시

◉법무부고시제475호

아래 사람은 1976년 7월 4일 미합중국에 귀화하여 미합중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국적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1976년 9월21일

법 무 부 장 관

본 적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37번지의 6
주 소 4607 Dumourin Ave Lisle Ill U.S.A
성 명 김종수(金鍾洙)
생년월일 1940년11월29일
성 별 남 자

◉법무부고시제476호

아래 사람은 1973년 3월14일 미합중국에 귀화하여 미합중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국적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1976년 9월21일

법 무 부 장 관

본 적 부산시 중구 남포동 2가 16번지
주 소 107 White Sand La, Racine, Wisc 53402
성 명 김병훈(金秉勳)
생년월일 1940년 4월26일
성 별 남 자

◉법무부고시제477호

아래 사람들은 1976년 5월25일 미합중국에 귀화하여 미합중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국적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1976년 9월21일

법 무 부 장 관

본 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170번지
주 소 2619 North Stratford Road Arington Hts Ill 60004 U.S.A
1. 성 명 이천주(李天柱)
생년월일 1934년 9월29일
성 별 남 자
2. 성 명 강신자(姜信子)
생년월일 1942년 1월 3
성 별 여 자

834 4

◉법무부고시제478호

아래 사람들은 1975년 5월 2일 미합중국에 귀화하여 미합중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국적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1976년 9월21일

법 무 부 장 관

본 적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1가 163번지
주 소 115 N. High St, Washington, Il, 61571
성 명 이정보(李禎甫)
생년월일 1929년 1월27일
성 별 남 자
성 명 최명규(崔鳴圭)
생년월일 1934년 3월 3일
성 별 여 자

◉법무부고시제479호

아래 사람은 1975년11월14일 미합중국에 귀화하여 미합중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국적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1976년 9월21일

법 무 부 장 관

본 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75번지
주 소 3008 Corda Dr, Los Angeles, Calif
성 명 김장환(金長煥)
생년월일 1925년11월24일
성 별 남 자

◉법무부고시제480호

아래 사람은 1976년 5월11일 미합중국에 귀화하여 미합중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국적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1976년 9월21일

법 무 부 장 관

본 적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642번지
주 소 816 Me Allister Sanfrancisco Cal 94102
성 명 조덕준(趙悳俊)
생년월일 1946년 2월21일
성 별 남 자

◉법무부고시제481호

아래 사람은 1976년 1월 6일 미합중국에 귀화하여 미합중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국적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1976년 9월21일

법 무 부 장 관

본 적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관음리 27번지
주 소 580 Crestlake Dr, S.F.CA, 94132
성 명 이성구(李城九)
생년월일 1937년 8월30일
성 별 남 자

◉법무부고시제482호

아래 사람은 1970년10월31일 불란서국의 국민과 혼인하여 불란서국의 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 국적법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1976년 9월22일

법 무 부 장 관

본 적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의동 57번지
주 소 Résidence les Tilleuls E-lst, Michel Sur Drge
성 명 민영의(閔泳鎰)
생년월일 1929년 1월 4일
성 별 여 자

◉건설부고시제149호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이에 고시한다.

1976년 9월21일

건 설 부 장 관

구분 / 구역	노선명	구간	총연장(키로미터)	구역변경이유
현구역	부산~온성선	강원도 삼척군 삼척읍 교리~ 강원도 명주군 묵호읍 부곡리	14,850	선형개량
변경구역	〃	〃	17,820	

※ 도면은 강원도지방국토관리청 서무과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공람한다.

835

◉문화공보부고시제248호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제11조에 의거 지정한 천연기념물을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6년 9월21일

문화공보부장관

문화재 지정목록

문화재		지정		구역			
						토지소유자	
종별	지정번호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천연기념물	256	단양고수리동굴	충북단양군대강면고수리	산 4-1	임	1.5200보 (4,560평)	충북단양군대강면고수리	단양군
				산 4-2	〃	2.0000보중 5,690평	경기도수원시원천동산5번지	유신학원
				산 6-1	〃	12.6400보중 3,135평	충북단양군대강면고수리	단양군
				산 6-2	〃	1.0000보 (3,000평)	경기도수원시원천동산5번지	유신학원
				129-1	전	1,149평중 960평	충북단양군대강면고수리 131	박노현
				129-3	〃	115평	〃	〃
				129-11	〃	27평	〃	〃
				129-12	〃	78평	〃	〃
				130	〃	780평중 525평	경기도수원시원천동산5번지	유신학원
				185	천	120평		국유
				계 10필		18,210평		

◉항만청고시제22호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고시한다.

1976년 9월21일

항만청장

허가년월일	점용및설치장소	목적	면적	기간	허가받은자주소,성명	기타
1976. 9. 21	경남마산시오동동 251의31번지 앞	찬교식물 양장설치	508.18평 (다만마산지방항만관리청장이 재조정할 수 있음.	1976. 9. 21부터 1977. 9. 20 까지	경남마산시오동동 251의3번지 마산시어업협동조합 진영근	없음

◉목포지방항만관리청고시제68호

공유수면 점용 및 공작물 설치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허가 하였으므로 고시한다.

1976년 9월20일

목포지방항만관리청장

허가년월일	점용장소	수면의 종류	면적	목적	기간	허가를받은자주소,성명	비고
1976. 9.20	목포시해안동4가6의3번지 지선 -	해면	10.2평	세빙탑설치	1976.10.16~1977.10.15	목포시금화동2번지 목포어업협동조합장 박수근	6

◉전파관리국고시제663호

전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을 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6년 9월13일

전파관리국장

1. 허가년월일과 번호
   1976년 9월13일 방허 제760036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한국방송공사장
3. 무선국명칭 종별과 그 설치장소
   삼척무인티비방송중계소(중계방송국)
   강원도 삼척군 삼척읍 등봉리(봉황산)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 지정무
5. 전파의 형식, 폭 및 주파수와 공중선전력
   6000 A5C F3 207 MHz (CH-12), (수신 : CH-9)
   100W (Pp) 실효복사전력 100W (Pp)
6. 기타 필요한 사항
   유효기간 : 1979년12월31일

◉전파관리국고시제664호

전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을 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6년 9월13일

전파관리국장

1. 허가년월일과 번호
   1976년 9월13일 방허 제760035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한국방송공사장
3. 무선국명칭, 종별과 그 설치장소
   강화무인티·비방송중계소(중계방송국)
   경기도 강화군 월곶면 포내리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지정무
5. 전파의 형식, 폭 및 주파수와 공중선전력
   6000 A5C F3 207 MHz(CH-12)
   10W (Pp), 실효복사전력14W(Pp)
6. 기타 필요한 사항
   유효기간 1979년12월31일

◉전파관리국고시제665호

전파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무선국을 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6년 9월13일

전파관리국장

1. 허가년월일과 번호
   1976년 9월13일 선허 제7620705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청해산업(주)장
3. 무선국의 종별과 그 설치장소
   어선 2청해호 원양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6NQQ (6NQQ-50)
5. 전파의 형식 및 주파수(KHz)와 공중선전력 (W)

주 : A1 100 0.1A1 / A2 130 2.1A2) 410 454 468 500 512
A1 200 0.1A1
C : 4181.8 6272.7 8363.6 12545.4 16727.2
22232 4182.6 6273.9 8365.2 12547.8
16730.4 22236
W : 4191 6286.5 8382 12573 16764 22280
4201.5 6302.25 8403 12604.5 16806
22305
A3J 50 2.8A3J / A3H 30 2.8A3H) C : 2182(2183.4)
A3J 50 2.8A3J
W : 2198(2199.4) 2319(2320.4) 2638(2639.4)
1880(1881.4)
보 : A1 75 0.1A1 2091 2050
A1 75 0.1A1 HF 주와 동(단, 22MHz대는 제외)

6. 기타 필요한 사항
   1. RADAR 10KW 4000 PO 9375 MHz
   2. SOS BUOY 10W 0.1A1 2091 KHz
   3. RADIO DIRECTION FINDER 1

◉전파관리국고시제666호

전파관리국고시 제143호(1969. 3.11)로 고시한 무선국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76년 9월13일

전파관리국장

(제 6 항 중) 기타 설비란에
정보자동수신기 1 대 증설한다.

◉전파관리국고시제667호

전파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무선국을 허가하고 전파관리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976년 9 월13일

전파관리국장

1. 허가년월일과 번호
1976년 9 월13일 선허 제7620704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청해산업(주)장
3. 무선국의 종별과 그 설치장소
어선 21청해호 원양
4.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6NQP(6NQP-50)
5. 전파의 형식 및 주파수(KHz)와 공중선전력(W)

주 : A1 150 0.1A1

A2 200 2.1A2
A1 250 0.1A1) 410 454 468 500 512

C : 4181.8 6272.7 8363.6 12545.4 16727.2
22232 4182.6 6273.9 8365.2 12547.8
16730.4 22236

W : 4191 6286.5 8382 12573 16764 22280
4201.5 6302.25 8403 12604.5 16806
22305

A3J 50 2.8A3J C : 2182(2183.4)
A3H 30 2.8A3H
A3J 50 2.8A3J
W : 2198(2199.4) 2319(2320.4) 2638(2639.4)
1880(1881.4)

보 : A1 100 0.1A1 2091 2050

A1 100 0.1A1 HF 주와 동(단, 22MHz대는 제외)

6. 기타 필요한 사항
1. RADAR 10 KW 4000 PO 9375 MHz
2. SOS BUOY 10W 0.1A1 2091 KHz
3. RADIO DIRECTION FINDER 1

◉전파관리국고시제668호

전파관리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부여하고 동령 제64조에 의하여 고시한다.

1976년 9 월17일

전파관리국장

면허부여내역.

특수급무선통신사(특을)

면허번호	성 명	면허번호	성 명
762830	지 봉 민	762831	김 성 수
762832	고 영 신	762833	김 철 명
762834	전 용 원	762835	김 정 철
762836	이 향 우	762837	이 성 도
762838	이 정 응	762839	이 갑 득
762840	김 박 금	762841	김 군 현
762842	이 윤 칠	762843	구 덕 수
762844	김 정 출	762845	임 유 섭
762846	이 창 환	762847	김 수 영
762848	박 영 진	762849	신 건 일
762850	이 용 오	762851	박 봉 윤
762852	박 상 태	762853	이 재 무
762854	정 우 경	762855	이 정 길
762856	김 덕 복	762857	박 덕 길
762858	신 정 규	762859	정 지 준
762860	고 봉 일	762861	김 명 석
762862	최 종 수	762863	문 종 찬
762864	고 윤 모	762865	오 용 덕
762866	국 응 희	762867	김 춘 길
762868	이 덕 윤		(계 39명)

공고

◉상공부공고제76-108호

농가공산품개발규정(상공부고시 제10,416호)제11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1976년도 새마을공장 지정과 새마을공장지정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6년 9 월22일

상공부장관

1. 1976년도 새마을공장 지정업체(제 7 차분)

지정번호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새마을공장 건설 지역	새마을공장 건설 업종
76-71	삼용전기공업(주)	구자상	서울 도봉구 방학동 445-2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남곡리	건전지
72	돈일산업(주)	황은주	서울 종로구 효제동 65-2	경기도 파주군 월용면 영태리	모피가공
73	부영산업(주)	김광제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고매리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고매리	공예도자기 및도자기완구
74	심중섬유공업(주)	이태석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8-29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팔곡1리	봉제품
75	태진산업(주)	정봉진	경기도 김포군 계양면임학리	경기도 김포군 계양면 임학리	자동차부품
76	고려피혁공업(주)	조원복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4 가80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팔곡2리	제 혁
77	불로공업사	장동석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07-80	경기도 시흥군 의왕면 삼리	의료기부분품
78	서안산업(주)	탁시근	경기도 인천시 북구 일신동 215	경기도 시흥군 수암면 논곡리	지퍼 및 분구도
79	봉림섬유	김의종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581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차항리	양 말
80	한일공업(주)	탁시근	서울 영등포구 개봉동 159	강원도 원성군 문막리 건동산	면태—프 제조
81	강원석재사	한준용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충남 당진군 당진읍대덕리	석재가공
82	(주)영흥특수도자기새마을공장	이택영	충남 천원군 성거면 신월리	충남 천원군 성거면신월리	도자기
83	한국카디날장갑(주)	박계윤	서울 중구 명동1 가 5의1	전북 옥구군 미면 산북리	작업용장갑·피
84	고령요업사	김순도	경북 고령군 쌍림면 송림동	경북 고령군 쌍림면송림동	도자기
85	김천산업공사	송영웅	경북 김천시 지좌동	경북 김천시 지좌동	양파가공
86	보경섬유공업사	정사랑	경북 칠곡군 칠곡면 관음동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동	봉제품
87	조일산업(주)	송형구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동	경북 영덕군 강구면 오포동	생선및과실류통조림
88	경산제지공업사	박병찬 윤병두	경북 대구시 중구 동인동 3 가 271	경북 경산군 경산읍 정평동	제 지
89	하나물산(주)	최승오	경북대구시남구대봉동281-1	경북경산군압량면부적동	피혁가공
90	고려합섬(주)	장치혁	서울 중구 양동 286	경북경산군남산면하대동	직 물
91	한국특수내화공업(주)	황준모	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187	경남김해군진영읍진영리	도 자 기
92	삼 강 직 물	김용연	경남밀양군삼랑진읍송지리	경남밀양군삼랑진송지리	골덴옥양목
93	동경무역(주)새마을공장	전영희	서울중구을지로 2 가199-15	경남양산군웅산면주진리	봉 제 품
94	태 창 기 업(주)	황래성	부산시 동래구 부곡동 315	경남양산군상북면소토리	골덴·우단 청 지
95	조 선 견 지(주)	김영구	부산시 동래구 거제동 840	경남울주군언양면부동리	견 직 물
96	조 방 무 역(주)	김병구	서울 중구 충무로 2 가 62-7	부산시 부산진구 만덕동	봉 제 품

(지정조건)

가. 농가공산품개발규정 제 8 조 및 제12조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나. 새마을공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기존업체는 본 공장 종업원의 수준으로 신규업체는 같은 업종의 평균임금수준을 유지할 것.

839

다. 삼용전기공업(주), 돈일산업(주), 한국특수내화공업(주), 삼강직물 태진산업(주), 고려피혁공업(주), 조일산업(주), 경산제지공업사, 조선견직(주)는 건축법시행령 제142조 12항에 의거 건설부와 협의한후 공장을 건설토록 할 것.

라. 삼용전기공업(주), 고려피혁공업(주), 하나물산(주)는 공해방지시설을 완비하여 가동할 것

마. 고려피혁공업(주)는 공장부지 중 전은 농지 전용이 가능한 3,000평 미만으로 축소 조정할 것.

바. 삼강직물은 기존시설등록연지기 52대와 신규허가 받은 연직기 48대를 새마을공장에 이전하여야 한다.

사. 고령요업사 한일공업(주) 서안산업(주)는 집도지역외에 불로공업사는 그린벨트 저촉지역외에 건축할 것.

2. 새마을공장지정취소업체

지정번호	업체명	대표자	공장소재지	업종
73-58	레인보물산(주)	전태근	경기 파주군 문산읍 사목리	전자부품목공기계류
81	한국교역진흥(주)	이종완	경기 고양군 중면 일산리	목재공예
2	다나무역(주)	안인모	경기 용인군 기흥면 상길리	봉제완구
114	덕혜합동성냥공업사	손권웅	경기 파주군 주내면 봉서리	성 냥
138	석전화학공업(주)	곽상근	충북 청원군 강서면 송절리	염록소
35	삼조산업사	이경현	충북 청원군 오창면 괴정리	수방사
83	중원상사	강재영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	건직물
24	성하산업(주)	한기열	충남 대덕군 산내면 대별리	작업용장갑
129	공만식품공업사	이경숙	충남 공주군 공주읍 옥용동	농수산물가공
74	한국교역진흥(주)	이종완	전남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초경제품
161	유신화학공업사	노동식	전남 광주시 쌍촌동	합성수지제품
38	영창산업사	김태창	경북,월성군 외동면 개곡리	수방사
115	한보산업사	임해정	경북 경산군 고산면 내간리	화투흑표지
74-130	삼영종합식품(주)	오요섭	경기 평택군 팽성면 두이리	농수산물가공
59	광성산업사	김한주	전북 옥구군 대야면 첩산리	전자제품
163	신월리새마을공장	한정길	전남 곡성군 곡성면 신월리	렌 즈
75-4	삼경클택스화학산업(주)	고성용	경기 화성군 태안면 안평리	스테트
27	한국정화조공업(주)	이태혁	경기 시흥군 소래면 신천리	정화조
61	삼화선재공업(주)	박상설	경남 양산군 물금면 유산리	전 선
91	경남농산가공(주)	최성준	경남 밀양군 삼랑진 미전리	토육가공
76-36	유성모직공업(주)	박용보	경남 밀양군 상남면 기산리	방모직물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건설부공고제132호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사용개시 및 사용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6년 9월21일

건 설 부 장 관

도로의종류	노선명	사용폐지구간	사용개시구간
일반국도	부산~온성선	강원도 삼척군 삼척읍 교리~강원도 명주군 묵호읍 부곡리(14,850키로미터)	좌 동 (17,820키로미터)

*도면은 강원도지방국토관리청 서무과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공람한다.

840 10

⊙보건사회부공고제53호

약사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6년 9월21일

보건사회부장관

1. 처분사항

약사법 제5조 제3항 및 제47조 위반으로 동법 제71조 규정에 의거 아래 약사에 대하여 9월간(1976. 9.28~1977. 6.27) 자격정지를 명함.

성 명	면허번호	생년월일
손병헌	18425	1950.12.13

2. 처분사유

가. 약사면허 대여

나. 약국관리불철저

다. 독·극약관리 불철저로 위와 같이 처분함.

지방행정

⊙부산시고시제1,393호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 제25조와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동법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고시한다.

도시계획법 제24조 제3항에 의한 공고는 본 고시로서 갈음하며 관계도서는 학교법인 동의학원 및 부산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6년 9월14일

부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73-1외 11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경동공업전문학교 부지조성)
3.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44,000평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산 114번지

학교법인 동의학원 이사장 김임식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 수 : 인가일로 부터 1개월

준 공 : 인가일로 부터 2개년

6.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별첨 생략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해당 없음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공고제45호

당위원회 산하 고려고등학교(사립 1973.11. 9 교명·변경인가)와 영동고등학교(사립 1972.12.29설립인가), 상문고등학교(사립 1972.12.29 설립인가), 동일여자고등학교(사립 1972.12.29 설립인가), 영파여자고등학교(사립 1973.10.29 교명변경인가), 명지여자고등학교(사립 1972.12.29 설립인가), 영등포여자상업고등학교(사립 1976. 6.30 교명변경인가), 정의여자고등학교(사립 1975.12. 6 설립인가), 예일여자고등학교(사립 1973.11.13 교명변경인가), 선일여자고등학교(사립 1972.11.15 교명변경인가), 한국국악예술학교(사립 1971. 9.30 설립인가), 숭덕실업전수학교(사립 1974.11.29 교명변경인가)가 조각 사용하고 있는 학교장 직인을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한다.

1976년 9월20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고려고등학교장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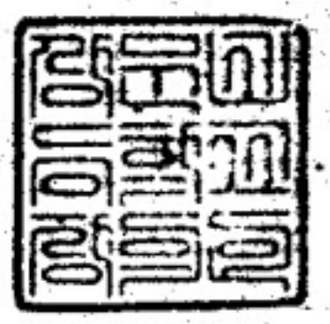


영동고등학교장 인 계 인





상문고등학교장 인



11

841

에일여자고등학교장 인 계 인

선일여자고등학교장 인

한국국악예술학교장 인

숭덕실업전수학교장 인

동일여자고등학교장 인 계 인

영파여자고등학교장 인 계 인

명지여자고등학교장 인 계 인

영등포여자상업고등학교장 인

정의여자고등학교장 인

휘 보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귀속됩니다.

1976년 9 월23일 842

춘천지방검찰청 12 사장

연도 사건번호	연도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명	환부인	압수물건 번호	압수물건 물건명	압수물건 수량
1967형 150	1967압 191	박찬성	사기	김기문	1	승낙서	1매
				〃	2	매매계약서	1매
				〃	3	가영수증	1매
6697	899	한창석	주거침입절도	방응환 입순에	4	영어사전(중고)	1권
				〃	5	육아사전(중고)	1권
				〃	6	종합영어연구	1권
				〃	7	영어사전(중고)	1권
				〃	8	일반사회문제	1권
7264	1123	김교천	사기등	박영희	1-15	당좌수표	15매
1968형 3842	1968압 597	이상견	외환관리법위반	이상견	1	미본토불 100원권	4매
				〃	2	미군표 5원권	2매
				〃	3	미군표 1원권	2매
				〃	4	동화 25전	1개
				〃	5	미본토불 100원권	1매
1969형 12	1969압 6	권오형	횡령등	박상규	1	동업계약서	1통
				〃	2	탄원서	3매
				〃	3	회신서	3매
				〃	4	산판대장	1권
				〃	5	약정서	1매
				〃	6	위임장	1통
1968형 4687	191	김무하 외 2	사기	심영수	1	영업위탁약정서	1통
				〃	2	대지임대약정서	1통
				〃	3	영업위탁약정서	1통
				〃	4	영수증	1통
1969형 2014	485	윤대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윤대중	1	수표	33매
1971형 1880	1971압 524	권하영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권하영	1	목탄환가대금	9,200원
3201	810	김진우 외 6명	〃	김진영	1.2	소나무원목환가대금	36,000원
1972형 2142	1972압 645	노연수	〃	불상	2	소나무원목환가대금	15,000원
2680	778	이원춘	산림법위반	〃	1	소나무원목환가대금	750원
4913	1282	불상	〃	〃	1	환가대금	[illegible]원

13 840

연도 사건번호	연도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명	환부인	압수물건 번호	압수물건 물건명	압수물건 수량
					2	티어카	2대
1973형 730	1973압 222	김옥순	관세법위반	김옥순	2	한은 500원권	1매
2705	848	김형기	폭력행위등	박순자	1	식 도	1개
1974형 5	1974압 53	김두현	산림법위반	허봉옥	1	환가대금	35,000원
				〃	1	초일지	1권
				〃	2	외상장부	1권
				〃	3	상회청구서	4매
				〃	4	외상거래중간상황기표	2매
				〃	5	상자장부	1권
1975형 440	1975압 131	김정섭	업무상과실치상	윤소근	1	치 마	1책
630	179	박무언 외2명	야간주거침입절도	권영득	1	청바지(중고)	1점
1492	447	심자홈	사기	이영섭	1	등기권리증	1통
				〃	2	과 서	1통
1840	532	임문순	절도		1	선풍기(폐품)	1대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박금순	5	비닐쓰레바	1족
				〃	6	알미늄밥통	1개
				불상	2	백색전기밥솥(중고)	1개
				〃	4	실내전축(중고)	1대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홍금자	3	황색전기밥솥(중고)	1개
1857	536	김문환	폭력행위등	고경순	2	칼	1개
				〃	3	가 위	1개
				〃	4	속치마	2개
				〃	5	속바지	2개
				〃	6	저고리	5개
				〃	7	머리카락	1속
1914	557	김수권	절도	불상	1	자전거	1대
1949	569	안이식 외 8	폭력행위등	김진수	1	노란색와이샤스	1점
1985	580	이경옥	공문서위조등	임연옥	1	주민등록증	1매
2016	587	이태석	횡령	최두교	1	계금통장(2416호)	1매
2138	624	박영덕	폭력행위등	박성해	5	명 단	1매

14

844

연도 사건번호	연도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명	환부 받을자	환부할 물건 번호	물건	수량
1975형2281	1975압 661	김건수	절도등	불상	9	개	1마리
2289	663	박일환	공문서 위조등	오영백	1	하천부지점용허가증	1매
2429	698	최무광	폭력행위등	손동섭	1	상약치아	2개
2728	787	홍만표	〃	정나실	1	원피스	2벌
				〃	2	모직속치마	1점
				〃	3	한복치마	1점
				〃	4	백색속치마	1점
				〃	5	어린이원피스	1점
				〃	6	부라우스	1점
				〃	7	반소매남방	1점
				〃	8	요컵메기(보)	1점
2766	796	한숙전	절도	송덕만		인장(목)	1개
2786	802	최효선	강간미수	김봉자	2	여자용팬티	1점
2887	816	정원영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정원영	1	그 물	1개
2893	818	김성상	절도	한상함	1	검은색루채용가방	1개
2947	832	이영아	외국환관리법위반	이영아	1	미화20불권	1매
3098	864	이종수	절도	불상	1	3,000리호경기용자전거	1대
3354	912	문희정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문희정	1,2	스파나	2개
3418	929	김영자	상습절도	정명선	4	교복치마	1개
3456	942	신만수	절도등	길대균	1	크라운휘대용라디오	1대
3742	1019	박승무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	〃	1	산돼지열(4분5리)	1개
3796	1039	이승율	횡령	변원구	1	증권구입대장	1권
					2	보통예금통장	1통
3850	1053	이해욱	모욕등	조한욱	1	머리카락	1속
3854	1054	한양석	도박		4,5,6	한 은	1,110원
1976형2	1976압2	김종철	절도	불상	1	자전거	1대
					2	소형라디오	1대
28	11	김선호	야간주거침입절도등	〃	1	미화20불지폐	1매
					2	미화10불지폐	1매

15
845

연도 사건번호	연도 압수번호	피의자 또는 피고인	죄명	환부 받을자	환부할 물건 번호	물건	수량
				불 상	3	미화 5불지폐	2매
1976형 56	1976압 23	곽금수 외 1	뇌물공여	곽금수	1	한은500원권	2매
376	103	박정자	절도	윤영애	1	한은500원권	2매
					2	한은100원권	1매
435	124	정기봉 외 1	폭력행위등	백경수	1	한 은	120원
453	131	전복남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불 상	1	소나무낙엽	2속
487	144	김주명	야간주거침입절도	〃	3	금성 8석라디오(중고)	1대
517	153	맹주성 외 5	상습특수절도	이정자	2	솟	1개
592	175	이민주 외 6	특수절도	불 상	1	계단장식용놋쇠(폐품)	4개
670	198	강동수	산림법위반	〃	1	활잡목환가대금	320원
836	248	용귀식	폭력행위등	유시영	1	한은 1,000원권	1매
938	276	장재덕	배임	불 상	1	당부책	2권
979	289	박영배	절도	〃	1	라듸오	1대
1080	327	김옥중	사기	〃	8,9	한은권	8,000원
1485	453	조용남	야간주거침절도	박영우	1	완력기	1개
1824	519	신기영	점유이탈물횡령	불 상	1	돼지새끼환가대금	63,000원
1883	531	김정자	절도	김덕주	1	치 마	1착
				〃	2	속치마	1착
				〃	3	속바지	1착
				〃	4	양 말	1착
1774	537	불 상	산림법위반	불 상	1	소나무환가대금	11,000원
2047	560	염봉림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위반	〃	1	소나무낙엽송	8속

○공시최고

76. 카. 3, 35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17(33통 1반)

신청인 정 숙 희

다음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1976년12월16일 14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6년 9월16일

서울[illegible] 영등포지원

판 사 이 [illegible] 우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4매

1. 번호 및 액면

번 호	액 면
라2392097	금100,000원정
라2392098	금100,000원정
라2392099	금100,000원정
라2392100	금10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6년 9월 6일

1. 발행인 및 지급인 서울신탁은행영등포지점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6. 카. 3,373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2동 1435번지(15통5반)

신청인 이 병 희

다음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1976년12월23일 14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6년 9월17일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판 사 이 용 우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3매

1. 번호 및 액면

번 호	액 면
5107512	금100,000원정
5107513	금100,000원정
5107514	금10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6년 8월24일

1. 지급인 및 발행인 한국상업은행영등포지점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6. 느. 174

경기도 인천시 동구 학수2동 111번지

청구인 한 봉 희(韓 鳳 熙)

본적 및 최후주소 경기도 화성군 매송면 호매실리 404번지

사건본인 (부재자) 한 상 백(韓 相 伯)

1926년12월20일생

위 실종선고 청구사건에 관하여 당 법원은 아래와 같이 최고한다.

1. 부재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생존의 신고를 할 것.

1. 위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는 위 기일까지 신고할 것.

1. 위 기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선고를 받는다.

1. 공시최고 기일 1977년 2월10일

1976년 8월 2일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심판관 송 운 호

---

76. 느. 175

경기도 안성군 대덕면 신령리 299

청구인 오 오 명(吳 梧 明)

본적 및 최후주소 경기도 안성군 대덕면 신령리 299

사건본인 (부재자) 김 주 용(金 周 龍)

1932년12월 5일생

위 실종선고 청구사건에 관하여 당 법원은 아래와 같이 최고한다.

1. 부재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생존의 신고를 할 것.

1. 위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는 위 기일까지 신고할 것.

1. 위 기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선고를 받는다.

1. 공시최고 기일 1977년 2월10일

1976년 8월 2일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심판관 송 운 호

17

847

76. 느. 176

경기도 용인군 용인면 운학리 471

청구인 김 진 성(金 振 成)

본적 및 최후주소 경기도 용인군 용인면 운학리 471

사건본인 (부재자) 김 진 섭(金 振 燮)

1948년 5 월10일생

위 실종선고 청구사건에 관하여 당 법원은 아래와 같이 최고한다.

1. 부재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생존의 신고를 할 것.
1. 위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는 위 기일까지 신고할 것.
1. 위 기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선고를 받는다.
1. 공시최고 기일 1977년 2 월11일

1976년 8 월 3 일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심판관 송 운 호

---

76. 느. 177

수원시 매산로 1 가 2-10

청구인 홍 종 하(洪 鍾 夏)

본적 및 최후주소 수원시 매산로 1 가 2-10

사건본인 (부재자) 홍 순 길(洪 淳 吉)

1933년12월26일생

위 실종선고 청구사건에 관하여 당 법원은 아래와 같이 최고한다.

1. 부재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생존의 신고를 할 것.
1. 위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는 위 기일까지 신고할 것.
1. 위 기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선고를 받는다.
1. 공시최고 기일 1977년 2 월11일

1976년 8 월 3 일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심판관 송 운 호

---

76. 느. 178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84-65 (3 통 5 반)

청구인 박 상 천(朴 商 天)

본적 및 최후주소 용인군 남산면 북리 742

사건본인 (부재자) 박 상 환(朴 商 煥)

1930년 2 월12일생

위 실종선고 청구사건에 관하여 당 법원은 아래와 같이 최고한다.

1. 부재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생존의 신고를 할 것.
1. 위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는 위 기일까지 신고할 것.
1. 위, 기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선고를 받는다.
1. 공시최고 기일 1976년 2 월11일

1976년 8 월 3 일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심판관 송 운 호

---

76. 느. 181

경기도 성남시 중동 A-305

청구인 이 현 우(李 鉉 宇)

본적 및 최후주소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화산리 375

사건본인 (부재자) 이 현 식(李 鉉 鉌)

1932년 4 월23일생

위 실종선고 청구사건에 관하여 당 법원은 아래와 같이 최고한다.

1. 부재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생존의 신고를 할 것.

1. 위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는 위 기일까지 신고할 것.

1. 위 기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선고를 받는다.

1. 공시최고 기일 1977년 2 월12일

1976년 8 월 4 일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심판관 송 운 호

---

76. 느. 182

평택군 고덕면 여염리 186

청구인 김 덕 만(金 德 萬)

본적 및 최후주소 경기도 평택군 고덕면 여염리186

사건본인 (부재자) 김 덕 환(金 德 煥)

1928년 8 월12일생

위 실종선고 청구사건에 관하여 당 법원은 아래와 같이 최고한다.

1. 부재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생존의 신고를 할 것.

1. 위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는 위 기일까지 신고할 것.

1. 위 기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선고를 받는다.

1. 공시최고 기일 1977년 2 월13일

1976년 8 월 5 일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심판관 송 운 호

---

76. 느. 183

경기도 평택군 고덕면 문곡리 205

청구인 심 화 섭(沈 和 燮)

본적 및 최후주소 경기도 평택군 고덕면 문곡리 205

사건본인 (부재자) 심 한 섭(沈 漢 燮)

1903년 5 월28일생

위 실종선고 청구사건에 관하여 당 법원은 아래와 같이 최고한다.

1. 부재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생존의 신고를 할 것.

1. 위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는 위 기일까지 신고할 것.

1. 위 기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선고를 받는다.

1. 공시최고 기일 1977년 2 월13일

1976년 8 월 5 일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심판관 송 운 호

---

76. 느. 187

화성군 봉담면 와우리 188

청구인 이 준 식(李 俊 植)

본적 및 최후주소 화성군 봉담면 와우리 188

사건본인 (부재자) 이 기 산(李 起 山)

1920년 6 월25일생

사건본인 (부재자) 이 기 홍(李 起 弘)

1924년 3 월10일생

위 실종선고 청구사건에 관하여 당 법원은 아래와 같이 최고한다.

1. 부재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생존의 신고를 할 것.

1. 위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는 위 기일까지 신고할 것.

1. 위 기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선고를 받는다.

1. 공시최고 기일 1977년 2 월19일

1976년 8 월11일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심판관 송 운 호

76. 느. 188

경기도 화성군 양감면 송산리 724

청구인 윤 학 석(尹學石)

본적및 최후주소 경기도 화성군 양감면 송산리 724.

사건본인 (부재자) 윤 봉 노(尹鳳老)

1929년10월23일생

위 실종선고 청구사건에 관하여 당 법원은 아래와 같이 최고한다.

1. 부재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생존의 신고를 할 것.
1. 위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는 위 기일까지 신고할 것.
1. 위 기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선고를 받는다.
1. 공시최고 기일 1977년 2월19일

1976년 8월11일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심판관 송 운 호

---

76. 카. 1,317

서울특별시 관악구 상도동 135의 30

신청인 최 만 수

다음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1976년12월30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6년 9월20일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판 사 김 중 곤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자기앞수표
1. 번 호 B가04869197가
1. 액 면 금30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6년 9월16일
1. 발 행 지 인천시
1. 발행인및 지 급 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인천지점
1. 수 취 인 소지인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6. 카. 1,313

인천시 북구 효성동 410번지

신청인 경기석유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덕 근

다음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1976년12월30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우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6년 9월20일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

판 사 김 중 곤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약속어음
1. 번 호 No 312058
1. 액 면 금1,000,000원정
1. 발행년월일 1976년 7월17일
1. 지급년월일 1976년 9월19일
1. 지 급 인 한국외환은행부평지점
1. 발 행 지 인천시
1. 발 행 인 김손환
1. 최후소지인 신청인

20

76. 카. 4,338

대구시 남구 봉덕동 1014의 850

신청인 최 상 선

다음 증서의 소지인은 1976년12월27인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6년 9 월20일

대구지방법원

판 사 김 원 기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약속어음 11매
1. 번호·액면 및 지급년월일

번 호	액 면	지급 년월일
472885	금1,000,000원정	1976. 10. 25
473055	금1,000,000원정	1976. 10. 30
473056	금1,000,000원정	〃
472891	금600,000원정	1976. 10. 25
472894	금1,487,000원정	1976. 10. 26
472988	금947,000원정	1976. 9. 20
473053	금1,650,000원정	1976. 10. 29
473054	금1,330,000원정	〃
473058	금1,167,000원정	1976. 11. 7
473051	금1,350,000원정	1976. 10. 30
473052	금1,170,000원정	1976. 10. 28

1. 발행인및 지급인 최상선
1. 지 급 인 대구은행대명동지점
1. 최후소지인 신청인

---

76. 카. 4, 361

대구시 중구 공평동 82의 1

신청인 이 상 도(李 相 道)

다음 증서의 소지인은 1976년12월27일 10시까지 본 법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택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76년 9 월21일

대구지방법원

판 사 정 광 희

증서의중요한취지

1. 종 류 물품보관증
1. 번 호 B8613호
1. 품 명 포 목
1. 수 량 62작
1. 발행년월일 1976년 9 월 3 일
1. 보관창고 장안창고, 대구시 중구 도원동 3번지 대 표 이 경 락
1. 최후소지인 및 보관인 이상도 대구시 중구 공평동 82의 1

---

76. 느. 25

본 적 경북 영주군 봉현면 하촌동 557

주 소 대구시 서구 내당 5동 1234의 6

청구인 김 택 동(金 宅 東)

본적 및 최후주소 경북 영주군 봉현면 하촌동 557

사건본인 (부재자) 김 영 한(金 煐 漢)

1924년12월15일생

위 실종신고 청구사건에 관하여 당 원은 다음과 같이 최고한다.

1. 부재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생존의 신고를 할것.
1. 위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신고할 것.
1. 공시최고 기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선고를 받는다.
1. 공시최고 기일 1977년 3 월28일

1976년 9 월20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심판관 한 제 영

---

76. 느. 928

경남 김해군 대저읍 사덕리 237

청구인 이 동 학(李 東 鶴)

본적 및 최후주소 경남 양산군 원동면 내포리 132

사건본인 (부재자) 이 원 학(李 元 鶴)

1916년 3월12일생

위 부재자에 대하여 청구인으로 부터 실종선고 청구가 있으므로 당 원은 다음과 같이 최고한다.

1. 부재자는 1977년 3월31일 10시까지 생존의 신고를 할 것이며 그 신고가 없으면 실종의 선고를 받게된다.

2. 위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는 위 기일까지 본 법원에 신고할 것.

1976년 9월17일

부산지방법원 가사심판부

심판관 강 문 종

---

76. 느. 929

부산시 서구 장림동 610(11-5)

청구인 김 창 윤(金 昌 允)

본적 및 최후주소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3가 570

사건본인 (부재자) 김 상 한(金 相 漢)

1919년 5월10일생

위 부재자에 대하여 청구인으로 부터 실종선고 청구가 있으므로 당원은 다음과 같이 최고한다.

1. 부재자는 1977년 3월31일 10시까지 생존의 신고를 할 것이며 그 신고가 없으면 실종의 선고를 받게된다.

2. 위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는 위 기일까지 본 법원에 신고할 것.

1976년 9월17일

부산지방법원 가사심판부

심판관 강 문 종

○심 판

76. 느. 10

본 적 경북 영주군 평은면 용혈리 541

주 소 경북 영주읍 영주리 304의 28

신청인 김 수 복(金 壽 福)

본적 및 최후주소 경북 영주군 평은면 용혈리 539

사건본인 (부재자) 김 인 용(金 仁 容)

1879년 2월29일생

본적 및 최후주소 위와 같은 곳

사건본인 (부재자) 김 수 덕(金 洙 德)

1929년 2월20일생

본적 및 최후주소 위와 같은 곳

사건본인 (부재자) 김 분 금(金 分 金)

1923년 5월15일생

본적 및 최후주소 위와 같은 곳

사건본인 (부재자) 김 후 숙(金 後 淑)

1926년 2월20일생

위 실종선고 신청사건에 관하여 당 원은 1976년 3월 9일 부재자의 생존신고에 대한 공시최고를 하였으나 공시최고 기일인 1976년 9월20일까지 그 신고가 없으므로 부재자를 1943년11월 이후 5년이상 생사불명인 것으로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심판한다.

주 문

부재자 김인용, 같은 김수덕, 같은 김분금, 같은 김후숙의 실종을 선고한다.

1976년 9월21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852 22 한 재 영

○결 정

72. 하. 1 파산선고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50

신청인 전주제지(全州製紙)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재 명

부산시 동래구 연산동 2003의 31

피신청인 유 시 용(柳 時 鎔)

주 문

본건 파산은 이를 폐지한다.

이 유

본건 파산선고는 1974년 9월14일 10시에 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으로는 파산재단으로서 파산절차의 비용도 충당할 길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파산법 제3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76년 9월15일

부산지방법원

판 사 윤 석 명

시·도 관보 보급 총국 일람표

시도별	보급소명	소재지	전화
서울	대한공론사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75-6161~9 75-6315
부산	부산총국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1가 186	42-6372
경기	경기총국	경기도 수원시 교동 201	6139
경남	경남총국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1가 186	42-6372
경북	경북총국	경북 대구시 중구 동인동2가 62	4-8294
전남	전남총국	전남 광주시 동구 금남로1가 19	2-1185
전북	전북총국	전북 전주시 고사동1가 11-14	2-3767
충남	충남총국	충남 대전시 대흥동 493-1	2-6828
충북	충북총국	충북 청주시 서운동 48-1	2972
강원	강원총국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145	3552
제주	제주총국	제주도 제주시 3도 2동 1118	5661

관보 제7457호 면당 단가 금 80원

편집 총무처 (75)6161~9
인쇄 대한고문사 (70)4331

24

854

2522